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되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지형적 여건, 야생조수류 서식실태,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.

* 최종 '저병원성' 및 '미분리'로 확인 시에도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간 해당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·예찰을 지속

| 예찰지역 내 주요 방역조치 | (2026. 11. 9 ~ 11. 30)

구분		대상별 방역조치
가금	닭 등	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·반출 허용
	오리·거위·기러기	반입·반출 금지 다만,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야생조수류 및 분변시료 채취 지점 반경 3~10km에 한하여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가 음성이고, 지자체에서 반입농가에 대한 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·감독 하에 반입 가능 (반입 후 5일 이내 오리에 대한 AI 검사 추가 실시)
알(종란·식용란)	닭 등	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·감독 하에 이동 허용
	오리·거위·기러기	폐기 다만, 종란은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에 한하여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(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,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)하는 경우 해당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하며, 야생조수류 및 분변시료 채취 지점 반경 3~10km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종오리 농장을 점검하고, 지자체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, 가축방역관의 지도·감독 하에 소독을 완료한 후 지정 부화장으로 종란 반출 허용 식용란은 오리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공용으로만 반출 허용
농장 분뇨		반출 금지 다만, 닭 분뇨는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처리장으로 이동 가능하며, 예찰지역 내 처리장이 없는 경우 시·도지사 승인을 받아 이동 허용
농장 사료·깔짚		반출 금지, 반입 시 소독 * 이동제한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·감독 하에 폐기
도축장	닭 등	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가금만 도축 허용
	오리·거위·기러기	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 오리만 도축 허용 다만, 검출지점으로부터 3km 내 가금농장 검사결과 AI 음성이고 방역대 외 가금에 대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도축 허용

구분		대상별 방역조치
사료공장		가축방역관 지도·감독 하에 생산·유통
부화장	닭 등	가축방역관 지도·감독 하에 부화·반출 허용
	오리·거위·기러기	이동제한 지역 외에서 반입된 종란 및 예찰지역 내 반출이 허용*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* ①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(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,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)하는 경우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, ② 예찰지역 내 야생조수류 검출지점 반경 3~10km 내에 종오리 농장이 위치한 경우, 종오리 농장에 대한 지자체 점검 및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·감독 하에 소독을 완료한 후 이동 허용

1.1.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타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, 해당 시·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
1.1.3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정보 현행화,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하고, 그 실적을 농식품부에 일일 단위로 보고한다.

* 최초 1회는 방역지역 내 전업 규모 가금농가 목록(농가명, 축주명, 연락처, 세부축종, 품종, 두수, 운영상태 등 포함)을 송부

1.1.4 가금 농가에 대해 지정된 지자체 전담 공무원(전담관)이 전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·홍보 추진

1.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방역조치는 "4. 고병원성 확진 시 조치"에 따른다.

1.3 방역지역의 해제 (~2026. 11. 13~ 별도통보시까지)

1.3.1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인한 '야생조수류 예찰지역' 내 방역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로 하며,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임상검사, 정밀검사[닭(칠면조, 메추리 등 닭목 포함)은 필요시 정밀검사, 오리 등 기타 가축(거위, 기러기,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)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)]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한다.